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수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8064

발의연월일: 2022. 11. 3.

발 의 자: 김수흥·강득구·김교흥

김병욱 • 김윤덕 • 김학용

안규백 • 윤준병 • 이명수

한병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'자율주행자동차'는 4차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로서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조제1호의3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음. 한편, 현행법은 '자동차' 및 '차량'을 '「자동차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'로 규정하고 있어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자율주행자동차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자동차 및 차량의 범위에 자율주행자동차를 명시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한 법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(안 제11조, 제48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중 "자동차와"를 "자동차 및 같은 조 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와"로 한다.

제48조제1항제1호 중 "자동차와"를 "자동차 및 같은 조 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와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고속국도의 지정·고시) 국	제11조(고속국도의 지정·고시)
토교통부장관은 도로교통망의	
중요한 축(軸)을 이루며 주요	
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자	
동차(「자동차관리법」 제2조	
제1호에 따른 <u>자동차와</u> 건설기	<u>자동차 및 같은 조</u>
계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	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
따른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	<u> 차와</u>
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 이하	
제47조, 제113조 및 제115조제1	
호에서 같다) 전용의 고속교통	
에 사용되는 도로 노선을 정하	
여 고속국도를 지정·고시한다.	
제48조(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)	제48조(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)
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	①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	
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	
따라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전	
용구역(이하 "자동차전용도로"	
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. 이	
경우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	

려는 도로에 둘 이상의 도로관 리청이 있으면 관계되는 도로 관리청이 공동으로 자동차전용 도로를 지정하여야 한다.

- 1. 도로의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하여 차량(「자동차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<u>자동</u>차와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
- 2. (생략)
- ② ~ ⑤ (생 략)

1
<u>자동</u>
차 및 같은 조 제1호의3에 따
른 자율주행자동차와
2. (현행과 같음)
2. (연영과 실금)
② ~ ⑤ (현행과 같음)